

개정 어촌·어항법 해설



김 옥 식 해양수산부 사무관

들어가며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등에 취약한 어항(漁港)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어촌·어항법」의 주요 내용은 어항의 기본시설 등에 대한 기술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어항시설 설계자나 어항개발 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기준에 따라 어항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어항개발 사업 중 토지, 물건 등의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다기능 어항 등에서의 수익형 상업·관광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같은 공익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어항 부지 중 방파제와 물양장 등 공공기능시설용 토지를 제외한 어촌관광구역 토지의 매각을 공공 단체에 우선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의 어촌관광구역 토지 투자가 가능해져 민간사업 자본 유입 확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어촌·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한 어촌·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외에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 있다.





「어촌·어항법」 개정 내용

1. 용어의 정리

1) 어장(제2조제3호가목)

기존법은 국가어항의 정의에 “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어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조제3호가목의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도시·군관리계획(제8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11.4.14. 법률제10599호)에 따라 용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도시·군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각 수정됨에 따라, 본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 용어를 수정하고 있다.

3) 기타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3항에서 청항업무를 “청항업무”(淸港業務)로 4항 어항청소선을 어항관리선으로 변경하였고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에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도”로 정리되었다.

2. 어촌·어항 관련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 시책강구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제2조의2, 제49조의3 신설)

그동안 전국의 지정어항이 989개이고 어항개발에 8조 5,489억원('67~'12)이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정비·관리 및 방재 등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의 개발·관리에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어촌·어항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체계를 마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3.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주체 변경(제21조제2항 개정)

법 개정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까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고, 과도한 협의절차로 행정부담이 증가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개발하는 지방어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만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어항개발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관계 시·도지사외만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595개 어촌정주어항 및 1,316개에 이르는 소규모어항(마을공동어항 개발시)의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행정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4.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시설의 귀속 주체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지정권자가 아닌 자”를 “비지정권자”(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 어항개발

사업을 시행)와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분하여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어항시설은 지정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의 혼선방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어항시설의 재산권 이전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후 지정권자에게 토지·시설 귀속되는 경우는 ① 해경, 해군이 어항에 파출소, 기지 등 시설 조성 후 지정권에게 귀속되거나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어항에 사업 시행 후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5. 어항시설의 기술기준 고시 및 안전점검 실시 신설(제24조)

개정법은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항시설을 설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이 기술기준에 따라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현재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위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해수면 상승, 파력, 풍력, 이상파랑 등에 대응한 어항시설의 재해예방 등의 효과가 제고되고 어항의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법령인 「항만법」 역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의 고시와 안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항만법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또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놓아 실효성을 높였다.(제24조제5항 신설)

6.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신설(제25조의2 신설)

법 개정전에는 어항육역에 대한 수용·사용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았으므로 그동안의 어항개발은 어선 수용을 위한 수역의 방과제 등 시설위주의 개발이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항의 상업·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업·관광부지 확보를 위한 배후부지 재정비 등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육역 부분 토지의 사용·수용 등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7.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제27조제2항)

개정법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한 토지는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기능 시설용 토지 외에 복지·문화·레저 등 상업·관광시설용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어항개발 및 상업자본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8. 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절차 간소화(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법은 비지정권자가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 사용·수익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사용·점용 허가를 다시 받지 않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법에서의 중복된 행정절차를 없애 어항관리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했다.

9.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제49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어항개발사업 이외에도 필요한 관리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기존법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을 통해서 어촌종합개발시설 및 어항시설의 관리,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등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한국어촌어항협회 설립목적 및 사업기능 보완(제57조 및 제58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목적은 어촌·어항의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현재 수행사업에 맞게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어장 등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사업과 기술개발·연구 및 관광활성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능을 보완하였다.

마치며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절차와 규제를 효율적으로 변경한 이번 개정안은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시켜 수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어촌이 국민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촌·어항법」은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근간의 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